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

제정 2010.03.16 개정 2014.08.18 개정 2021.05.07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고발대상) 고발대상은 공사의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,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, 공직자윤리법,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행위를 말한다.<개정 2014.08.18>
- **제3조(고발주체)**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(퇴직자 포함)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사장 또는 감사는 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고발여부의 판단) 고발여부의 결정은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08.18., 2021.05.07>
 - 1.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 등을 한 경우
 - 2.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·유용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
 - 3. 최근 3년 이내 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
 - 4. 인사업무(채용·승진·근무성적평정), 계약업무(허위 납품검수 및 부실 준공검사 포함) 및 자금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·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
 - 5. 직무상 알게 된 정보·비밀을 이용·제공·누락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
 - 6. 그 밖에 범죄의 횟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5조(고발시기 및 절차)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때 '사실을 확인 한 즉시'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.
 - ②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.<삭제 2014.08.18., 신설 2021.05.07>
 - ③ 고발은 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, 범죄혐의자가 도

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(고발처리 상황 관리) 감사담당자는 [별표] "직무관련범죄 고발처리 상황부"를 비치하여 고발 요청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) 사장은 범죄행위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「인사규정」 제47조(징계)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08.18., 2021.05.07>

부 칙

이 지침은 2010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1년 5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
직무관련 범죄 고발처리 상황부

일런 번호	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	피고 발자			ુ મો.	고발장	스타케티 카웨기형	기타참고사항
		소속	직급 (직위)	성명	고발 일시	접 수 기관명	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	(고발유예 사유 등)